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5.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6. 5

다. 상 정 일 자 : 2003. 6. 5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총무과장 조 규 문

나. 개정사유

-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2. 1. 8 설치되었던 한시기구(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이 2002. 12. 31에서 2004. 6. 30 까지 연장 승인되었기 한시기구의 존속기관을 연장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 까지 연장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조례 제1714호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연장 승인(전라남도 자치 12200-2388, 2002. 12. 4)에 따라, 제108회 정례회에서 주민자치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존속기한을 당초 요구한 2004. 6. 30까지에서 2003. 6. 30까지만 부분 연장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내용대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 6. 30까지 연장하는 조례임.
내용상 별다른 의견 없음.
-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714호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u>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p>	<p>조례 제1714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p> <p><u>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p>